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지정유산 관람료의 기금 납부 비율 확대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28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가지정유산 관람료의 기금 납부 비율 확대(안 제4조제2항)	3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 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25.

다. 회 부 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비롯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일정금액(10%) 등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재원의 상당액을 차지하던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하여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국가지정유산 관람료의 기금 납부 비율 확대(안 제4조제2항)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유산 관람료의 국가유산보호기금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	제4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징수금액의 100분의 10</u> 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금액의 일부를</u> ----- -----.
<신설>	<u>1.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 징수</u>

<신 설> ③·④ (생 략)	금액의 100분의 20 2.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 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15 ③·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금액의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징수방법·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 한편,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는 것으로²⁾,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일반 세입·세출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운영함. 이에 따라, 기금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임.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최근 수년간 다양한 현장 중심의 국가유산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자료: 참고 2).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①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 지정문화유산”은 “임시 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 지정명승”으로 본다.

- 2)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국가유산 돌봄사업’은 전국 약 9천여 개소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지역 인력을 활용하여 일상관리, 경미수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함.
-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사업’은 재난방지시설 구축, 유지관리, 방재 인력 배치 등을 통해 문화유산 재난 예방 인프라를 강화함.
-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태풍, 장마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 복구와 방제 작업을 수행함.

○ 그러나 최근 5년간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수입 구조를 보면, 전체 수입 중 복권기금 전입금이 평균 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관람료 등) 비율은 평균 5.3%에 불과한 실정임.

(단위: 백만원, %)

연도	수입 결산 (A)	자체수입 결산 (B)	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 (B/A)	정부내부거래 결산 (C)	수입 중 정부내부거래 비중 (C/A)	기금사업비 결산 (D)	기금사업비 중 자체수입 비중 (B/D)
2020	154,973	6,390	4.1	128,206	82.7	136,276	4.7
2021	154,992	5,487	3.5	133,939	86.4	133,719	4.1
2022	167,775	9,849	5.9	140,643	83.8	145,975	6.7
2023	183,290	7,346	4.0	158,339	86.4	159,208	4.6
2024	189,062	17,068	9.0	152,611	80.7	157,376	10.8

※ 자료: 국가유산청

○ 이처럼 복권기금 전입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기금의 신축적 운용을 저해하고, 사업 추진 여부가 외부 재원 상황에 크게 좌

우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2018년 이후 복권기금 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을 통한 차입이 진행되어, 누적 916억원 규모의 차입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연간 약 16억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원금 상환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어, 공자기금 예수금 구조가 기금운용의 추가적인 재정압박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자료: 참고4).
- 이에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성 개선을 도모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보호기금 확대 필요에 따라 국가의 징수 비율을 확대하되, 지역경제 불황에 따른 관람인원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 및 지방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징수액에 대한 기금 납부 비율 확대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정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람료 사용 규정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경주시는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에 따라 양동마을 관람료를 시의 일반세입으로 편입한 후, 국가유산보호기금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는 양동마을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 및 관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사용함. 나머지 금액은 양동마을운영위원회 운영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설사 운영비 등 마을 공동체 운영에 사용함.
- 안동시는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및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를 통해 관람료 수입을 일반세입으로 편입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환경정화, 화재예방, 전승활동 등에 사용함. 그리고,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의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마을주민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제례행사나 주민복지사업, 문화행사 등에 사용함.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람료 사용 규정]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제14조(관람료의 사용) ①관람료의 징수금액은 경주시 일반세입으로 한다.

②세입금 중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양동마을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
2. 양동마을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3. 시장이 양동마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세입금 중 제2항의 징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양동마을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비

2.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15%를 부담한다.
- ④제3항의 양동마을운영위원회 보상금은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제11조(관람료 사용) ①징수한 관람료는 시의 일반세입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세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1.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2. 국가유산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3. 국가유산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4. 국가유산에 대한 애호심 고취, 문화재의 소개 및 전승을 위한 사업
5.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6.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보상금 지급. 이 경우 보상금은 전 분기 관람료 수입금에서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제외한 100분의 40 이내로 하며,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가. 정기적 제례행사 운영에 관한 경비
 - 나.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및 종가의 집빈행사에 관한 경비
 - 다. 퇴계선생 선양을 위한 부대행사 경비 등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제11조(관람료의 사용) ①관람료의 징수금액은 안동시 일반세입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세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1.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2. 국가유산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3. 국가유산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4. 국가유산에 대한 애호심 고취, 국가유산의 소재 및 전승을 위한 사업
5.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6. 하회마을 주민을 위한 보상금 지급.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세입금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와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하회마을보존회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가.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에 관한 경비
 - 나. 하회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하회마을보존회(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 하회마을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7. 하회마을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
8. 하회세계탈박물관 운영을 위한 보상금 지급.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세입금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 국가유산보호기금 및 하회마을 주민을 위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27 이내로 하되 협약으로 정하고, 전 분기 세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 ③제2항제6호에 따른 보상금은 전 분기 세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 참고로, 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음.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26., 도종환의원 대표발의)에서도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관람료 납부 비율 인상을 동일하게 추진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제주, 경주 등)의 현행 유지 의견과 열악한 지방 재정 고려시 지자체 납부 비율을 유지하고 국가 납부 비율만 상향하는 방안 고려 필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자료: 참고1).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보호기금 확대 필요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등 관람료 징수금액의 기금 납부 비율을 국가(국가유산청만 해당)는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수 감소 및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편, 국가유산청은 납부 기여도 고려시 국가의 납부 비율만 20%로 상향할 경우 연간 약 13.7억원 정도의 기금 수입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2024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액의 기금 납부 현황 및 법 개정 시 수입증대 전망]

(단위: 백만원)

연도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합계	비고
2024년 관람료 징수액	1,371	2,761	4,132	전체 기금수입(1,699억원)의 2.4% 차지
(발의안) 국가지자체 납부 비율 증가 시	▶10% → 20%	▶10% → 15%	6,883 (+2,751)	전체 기금수입(1,699억원)의 4.0% 차지 * 관람료 수입 66.6% 증가
	2,742 (+1,371)	4,141 (+1,380)		
(수정의견) 국가 납부 비율만 증가 시	▶10% → 20%	10% 유지	5,503 (+1,371)	전체 기금수입(1,699억원)의 3.2% 차지 * 관람료 수입 33.2% 증가
	2,742 (+1,371)	2,761 (-)		

- 아울러, 개정안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칙 시행일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은 제도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 등이 필요하기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안동시·경주시)의 의견은 모두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자료:참고 3).
 -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상 기금 비율은 '09년 관람료 적정 징수비율 등을 검토하여 정해졌고, 개정안과 같이 기금 수입원의 비율을 임의 조정할 경우 다른 회계·기금에서도 유사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기금 재원은 수입원 징수 비율을 상향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에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비상시 대규모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을 통해 대응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비율 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납부 비율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경제 불황과 관람객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행 납부 비율 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 **경상북도 안동시**는 하회마을과 같은 문화유산의 경우 관람객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입장료 수입 일부를 주민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납부 비율을 15%로 인상할 경우 주민 보상금이 줄어들어 주민의 불편과 상실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경상북도 경주시**는 문화유산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입장료 수입의 사용처가 조례로 지정되고 있으며, 예컨대 양동마을의 경우 국가유산보호기금 납부분을 제외한 입장료 징수금의 50%를 마을 운영위원회 운영 및 마을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납부비율을 상향할 경우 마을 지원금이 줄어들어 마을 공동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경우에는 현행 10% 납부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1

과거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심사경과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
문화재보호 기금법 일부 개정 (2105757)	도종환 (20.11.26)	국가지정유산 관람료의 기금 납부 비율 확대	(상임위) •상정('21.2.24) •소위('21.3.11) •임기만료 폐기 (24.5.29)	- (이용의원) 지방자치단체 관람료 납부액의 60%를 차지하는 제주와 경주를 포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납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납부 비율 상향이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 (김승수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실정이 열악함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납부 비율은 현행으로 유지하고 국가의 납부 비율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참고2

관련사업 추진현황

○ 국가유산 돌봄사업

구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2년	19,286	지역돌봄단체*	• 돌봄 대상문화유산 9,047개소 관리 • 인력 922명 채용을 통한 대상문화재별 일상관리, 모니터링, 경미수리
'23년	20,651	지역돌봄단체	• 돌봄 대상문화유산 9,102개소 관리 • 인력 831명 채용을 통한 대상문화재별 일상관리, 모니터링, 경미수리
'24년	18,962	지역돌봄단체	• 돌봄 대상문화유산 8,966개소 관리 • 인력 766명 채용을 통한 대상문화재별 일상관리, 모니터링, 경미수리

* 광역지자체에서 선정

○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사업

구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2년	24,371	기초지자체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57건 • 문화재 재난방지 유지관리 520건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574명 •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구축 21건 등
'23년	25,636	기초지자체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39건 • 문화재 재난방지 유지관리 543건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634명
'24년	25,085	기초지자체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45건 • 문화재 재난방지 유지관리 554건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634명

○ 국가유산 긴급보수

구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2년	4,121	기초지자체	• 태풍 및 장마철 집중호우피해복구, 담장보수, 흰개미 방제 등 62건
'23년	3,710	기초지자체	• 태풍 및 장마철 집중호우피해복구, 담장보수, 흰개미 방제 등 71건
'24년	4,076	기초지자체	• 태풍 및 장마철 집중호우피해복구, 담장보수, 소나무재선충방제 등 64건

참고3

타 부처 및 지자체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5.5.29.)	- 제4조제2항 현행유지 - 정부의 회계·기금 신설 시 재원조달 방안은 각 주체별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전입금·부담금 신설 등이 신중하게 결정. 동기금의 경우에도 '09년 관람료 적정 징수비율 등을 검토하여 법안 제정되었으므로 비율 변경은 신중할 필요 * 동기요구처럼 기금 수입원의 비율을 임의 조정할 경우 다른 회계·기금에서도 유사요구가 확산될 우려 - 현재 동기금은 수입원 징수 비율을 상향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비상시 대규모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他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을 통해 대응가능한 점도 고려할 필요 * 「국가재정법」 §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 지자체 의견

지자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25.4.8.)	- 제4조제2항 현행유지 - 국가유산청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존치를 위해 기금의 수입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납부 비율을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역경제 불황에 따른 관람인원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경상북도 안동시 (‘25.4.8.)	- 제4조제2항 현행유지 - 현재 하회마을은 하회마을을 찾는 관람객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에 따른 반대급부적 경비 성격으로, 조례에 의거 입장료 수익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기금 징수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될 경우 주민들의 보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줄어들게 되면 주민의 불편과 상실감은 늘어날 것.
경상북도 경주시 (‘25.4.8.)	- 제4조제2항 현행유지 - 문화유산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일 경우, 입장료 수입의 사용처가 조례로 지정됨. 우리시의 경우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제14조(관람료의 사용)에 따라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징수금액 중 100분의 50을 양동마을 운영위원회 운영 및 마을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보호기금 상승에 따른 마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 *수정안 제출 : 단, 소유자가 개인 또는 단체일 경우 100분의 10으로 한다.

참고4

관련 통계

□ 최근 5년간 문화유산 관람료 수입의 기금 납부 현황('20~'24년, 징수금액의 10%)

(단위: 백만원)

연도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합계	비고 (지자체 비중(%))
2020	391	1,991	2,382	83.5
2021	518	2,436	2,953	82.5
2022	888	2,899	3,787	76.5
2023	1,226	3,033	4,259	71.2
2024	1,371	2,761	4,132	66.8
연평균	879	2,624	3,503	76.1

※ 법 개정 시 수입증대 전망

(단위: 백만원)

연도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합계
2024	1,371	2,761	4,132
(발의안) 국가·지자체 납부 비율 증가 시	▶10% → 20%	▶10% → 15%	6,883 (+2,751)
	2,742 (+1,371)	4,141 (+1,380)	
(수정안) 국가 납부 비율만 증가 시	▶10% → 20%	10% 유지	5,503 (+1,371)
	2,742 (+1,371)	2,761 (-)	

□ 2024 국가유산 관람료 수입의 기금납부금액

연 번	징수기관 (22개소)	대상 유산 (22개)	2024 관람료수입 기금납부금액 (천원, 징수액의 10%)	비율
1	경복궁관리소	경복궁	763,193	55.7%
2	창덕궁관리소	창덕궁	360,499	26.3%
3	창경궁관리소	창경궁	48,192	3.5%
4	덕수궁관리소	덕수궁	92,335	6.7%
5	종묘관리소	종묘	22,562	1.6%
6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4,754	0.3%
7	정릉관리소	서울 정릉	1,780	0.1%
8	서오릉관리소	고양 서오릉	11,136	0.8%
9	서삼릉출장소	고양 서삼릉	1,011	0.1%
10	광릉관리소	남양주 광릉	3,177	0.2%
11	동구릉관리소	구리 동구릉	8,143	0.6%
12	태릉관리소	서울 태릉과 강릉	2,071	0.2%
13	홍유릉관리소	남양주 홍릉과 유릉	1,299	0.1%
14	사릉(동부지구)	남양주 사릉	502	0.0%
15	현릉관리소	서울 현릉과 인릉	1,263	0.1%
16	선릉관리소	서울 선릉과 정릉	20,580	1.5%
17	융릉관리소	화성 융릉과 건릉	16,167	1.2%
18	파주삼릉관리소	파주 삼릉	2,294	0.2%
19	장릉관리소	김포 장릉	7,116	0.5%

연 번	징수기관 (22개소)	대상 유산 (22개)	2024 관람료수입 기금납부금액 (천원, 징수액의 10%)	비율
20	파주장릉관리소	파주 장릉	843	0.1%
21	의릉관리소	서울 의릉	1,217	0.1%
22	영취원출장소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	646	0.0%
합계			1,370,782	100.0%

□ 지자체 관람료 징수대상 : 63개

연번	시도	징수기관 (38개소)	대상 유산 (63개)	2024 관람료수입 기금납부금액 (천원, 징수액의 10%)	시군별 납부액		광역별 납부액	
					금액(천원)	비율	금액(천원)	비율
1	서울	강동구	서울 암사동 유적	2,099	76,008	2.8%	76,008	2.8%
2		서대문구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73,909				
3	인천	강화군	강화 갑곶돈대	2,702	19,608	0.7%	19,608	0.7%
4			강화 고려궁지	4,620				
5			강화 광성보	12,287				
6	경기	수원시	수원 화성행궁	52,970	52,970	1.9%	60,410	2.2%
7		파주시	파주 이이 유적	5,019	5,019	0.2%		
8			황희선생유적지					
9		경기도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 행궁	2,421	2,421	0.1%		
10	강원	강릉시	강릉 오죽헌	101,209	101,209	3.7%	356,160	12.9%
11		태백시	태백 용연굴	14,650	14,650	0.5%		
12		삼척시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대금굴)	93,797	93,797	3.4%		
13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환선굴)					
14		영월군	영월 장릉	70,533	70,533	2.6%		
15			영월 고씨굴					
16			영월 청령포					
17		평창군	평창 백룡동굴	14,031	14,031	0.5%		
18		정선군	정선 화암동굴	23,038	23,038	0.8%		
19		동해시	동해 무릉계곡	38,903	38,903	1.4%		
20	충북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내 한백루 등	21,810	21,810	0.8%	39,687	1.4%
21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내 문산관 등	1,420	1,420	0.1%		
22		단양군	단양 온달동굴	16,457	16,457	0.6%		

연번	시도	징수기관 (38개소)	대상 유산 (63개)	2024 관람료수입 기금납부금액 (천원, 징수액의 10%)	시군별 납부액		광역별 납부액	
					금액(천원)	비율	금액(천원)	비율
23	충남	공주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79,479	79,479	2.9%	135,939	4.9%
24			공주 공산성					
25			공주 석장리 유적					
26		아산시	아산 외암마을	23,491	23,491	0.9%		
27		서천군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7,243	7,243	0.3%		
28		부여군	부여 부소산성	24,355	25,726	0.9%		
29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				
30			부여 왕릉원	1,371				
31	전북	남원시	남원 광한루	79,319	79,319	2.9%	221,047	8.0%
32		고창군	고창읍성	19,800	19,800	0.7%		
33		전주시	전주 경기전	121,928	121,928	4.4%		
34	전남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90,000	90,000	3.3%	187,988	6.8%
35		영암군	왕인박사유적	174	174	0.0%		
36		진도군	진도 윤림산방	17,704	17,704	0.6%		
37		해남관광지 관리사업소	해남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26,067	26,067	0.9%		
38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 원림	5,625	5,625	0.2%		
39		담양군	담양 소쇄원	15,097	15,097	0.5%		
40		목포시	구 목포 일본영사관(근대역사관1관)	33,321	33,321	1.2%		
41	경남	경남 통영시	통영 세병관	12,051	12,051	0.4%	44,419	1.6%
42		진주시	진주성	32,368	32,368	1.2%		

연번	시도	징수기관 (38개소)	대상 유산 (63개)	2024 관람료수입 기금납부금액 (천원, 징수액의 10%)	시군별 납부액		광역별 납부액	
					금액(천원)	비율	금액(천원)	비율
43	경북	경주시	경주 대릉원 일원	156,850	548,589	19.9%	779,983	28.3%
44			경주 동궁과 월지 (구 안압지)	332,664				
45			경주 포석정지	5,841				
46			경주 오름	5,935				
47			경주 김유신묘	4,773				
48			경주 무열왕릉	5,881				
49			경주 양동마을	36,645				
50		안동시	안동 도산서원	26,781	152,337	5.5%		
51			안동 하회마을	125,557				
52		영주시	영주 소수서원	9,796	9,796	0.4%		
53		울진군	울진 성류굴	69,260	69,260	2.5%		
5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6,959	839,699	30.4%	839,699	30.4%
55		(세계유산본부)	제주 김녕굴과 만장굴	-				
56		(세계유산본부문화 유적관리과)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114,858				
57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288,698				
58			제주목 관아	9,107				
59		제주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	420,077				
60			천제연					
61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62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63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합계				2,760,948	2,760,948	100%	2,760,948	100%

□ 국가유산보호기금 수입 계획 (2010-2025)

(단위: 억원)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총계	1,214	1,238	1,302	1,326	1,306	1,419	1,517	1,334	1,270	1,307	1,510	1,418	1,550	1,689	1,699	1,689
자체 수입	60	42	55	55	64	86	116	116	89	89	89	59	113	73	108	108
입장료수입	40	40	40	40	40	46	56	56	56	56	56	26	80	40	50	50
기타재산수입	0	2	15	15	15	15	20	20	3	3	3	3	3	3	3	3
기타경상이전수입	20	0	0	0	9	25	40	40	30	30	30	30	30	30	55	55
전입금	1,154	887	939	1,069	991	1,067	1,053	799	925	1,106	1,282	1,339	1,406	1,583	1,526	1,448
일반회계 전입금	796	371	371	371	371	371	371	-	-	-	-	-	-	-	-	-
복권기금 전입금	358	516	568	698	620	696	682	799	843	1,013	951	929	1,406	1,583	1,526	1,448
공자기금 예수금					-	-	-	-	82	93	331	410	-	-	-	82
비통화금융자산처분수	0	309	308	202	251	266	348	419	256	112	139	20	31	32	65	51

주: 계획액 기준임

* 일반회계 전입금 '17년도부터 전입금 중단

* 공공자금관리기금 : '18년도 부터 916억 예수금('18년 82억 → '19년 93억 → '20년 331억 → '21년 410억)

상환계획('25년 82억→ '26년 93억 → '30년 601억 → '31년 139억)

* 예수원금 상환을 위하여 '25년도 부터 신규예수('25년 82억), '2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도입추진(기재부 협의)

□ 최근 3년간 국가유산보호기금 수지 현황(2023~2025년)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구분			2023	2024	2025
			계획	계획	계획
수입	자체 수입	기타재산수입	340	340	340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	5,526	5,526
		입장료 등 (잡수입, 위약금, 대여료 포함)	4,000	5,000	5,000
	정부 내부 수입	일반회계전입금	-	-	-
		기금전입금(복권기금)	158,339	152,611	144,815
		기금예수금(공자기금)	-	-	8,170
	보전 수입	비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회수 포함)	3,276	6,505	5,118
합계			168,955	169,982	168,969
지출	총지출	주요사업비	160,749	159,063	143,337
		기금운영비	120	116	113
	내부 거래	기금전출(복권기금)	3,000	4,000	4,000
		예수원금상환	-	-	8,170
		예수이자상환	1,581	1,585	1,614
	보전 지출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여유자금)	3,505	5,218	11,735